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11호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 강릉시의회의장

#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 역사문화 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책무 등 (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 및 대상, 지원범위 및 규모, 사업수행 장소 등 (안 제4조~제6조)
- 다. 지원신청, 지원기간 및 제외 등 (안 제7조~제8조)
- 라. 환수, 결과보고 등(안 제9조~제10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 4. 참고사항

-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 역사문화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가. 고려·조선시대 왕조(王朝)국가에서 지방에 선현(先賢)에 대한 제사와 유생(儒生)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운 기관

나. 강원도가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이 관리 운영하며, 같은 법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의 문화교육 및 발전 등에 기여하는 시설

2. “서원”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선시대 중기 이후 개인이 지방에서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운 기관

나. 강원도가 「문화재보호법」 제70조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한 시설

3. “영당(影堂)”이란 이름난 이의 화상(畫像)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시 소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당(社堂)을 말한다.

가. 강원도가 「문화재보호법」 제7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나. 그 밖에 시장이 특히 지방문화·예술적 보존가치를 인정하는 시설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 조례에서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향교·서원 및 영당의 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고, 시

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관광객에게 그 향유(享有)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향교·서원 및 영당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 문화·예술유산의 보존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향교·서원 및 영당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향교·서원 및 영당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활성화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교사양성

가. 강학교육

나. 인성교육

다. 예절교육

라. 의례교육

2. 문화행사

가. 전시 및 공연

나. 한시·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가. 제향

나.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다.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4. 그 밖에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6조(사업수행 장소)** ① 향교·서원 및 영당은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활성

화사업을 그 시설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 장소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경로당
2.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
3. 시민단체 또는 읍·면·동장이 요청하는 장소
4. 시의 문화예술, 자연경관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지원신청)** ① 향교·서원 및 영당은 활성화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신청사업의 적정성
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향유에 미치는 영향
3. 지원출처별 비용사용의 투명성
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향교·서원 및 영당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활성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8조(지원기간 및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성화사업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원기간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지원 사업
2. 단기 또는 중·장기지원 사업

② 시장은 향교·서원 및 영당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과 중복되는 지원을 제

외해야 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향교·서원 및 영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법령·조례 또는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천재지변이나 질병확산 등의 사유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
  - 나. 수혜자나 회원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 다. 파행적으로 수행된 경우
4. 지원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된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환수에 응하지 않는 향교·서원 및 영당에 대하여 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결과보고)** ① 활성화사업 지원을 받은 향교·서원 및 영당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준용)**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